

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세칙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사유
제11조(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) ① (생략) ② 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은 교비로 지원 할 수 없다. 다만, 교비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	제11조(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은 교비로 지원 할 수 없다. 다만, 각 학과 주임교수가 승인한 경우 교육조교에 한하여 교비지원이 가능하며, 교비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	학생조교수당을 초과등록자에게 교비로 지급 가능